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검토보고

2000. 8. 28

교육사회위원회

### 1. 제 안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2. 제 안 및 회 부 일자

- 제 안 : 2000년 8월 10일 제출
- 회 부 : 2000년 8월 11일

### 3. 제 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 2000. 1. 28. 법률 제6,216 호)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할·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사과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4. 주요골자

- 의사과장의 분장사무중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임.

## 5. 검토의견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2000.1.28 법률 제6,216호)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할·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사국 의사과장의 분장사무중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